

학교법인 순효학원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7명	재적이사	7명
감사정수	2명	재적감사	2명

1. 회의일시: 2022. 3. 8.(화) 11:00~11:50(회의소집 통보일: 2022년 2월 28일)

2. 회의장소: 법인 이사장실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 이사: 조성극, 강성락, 변학환, 김영란, 김관유
- 불참 이사: 김인숙, 최준오

4. 심의·의결 안건

- 제1호: 학교법인 순효학원 「정관」 개정 심의
- 제2호: 신안산대학교 전임교원 전보 심의
- 제3호: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의
- 제4호: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휴직 심의
- 제5호: 신안산대학교 유휴부지 토지임대 심의
- 제6호: 신안산대학교 유휴부지 일부 매각 추진 심의
- 제7호: 신안산대학교 수목 정리 소나무 추가 매각 심의
- 제8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심의
- 제9호: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 심의

5. 회의내용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윤준한 사무국장: 의결정족수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 조성극 이사장: 2022학년도 제2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 전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 조성극 이사장이 이사들에게 전차회의록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참석 이사 전원 열람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다.

○ 심의안건 제1호: 학교법인 순효학원 「정관」 개정(안)

- 조성극 이사장: 순효학원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하도록 하다.

간서명 란	이사장 조성극	조성극	이사 김영란	김영란	이사 김관유	김관유
----------	------------	-----	-----------	-----	-----------	-----

하였음을 설명하다.

○ 심의안건 제3호: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안)

- 조성극 이사장: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하도록 하다.
- 윤준한 사무국장: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지난 2월 14일 대면 보고로 동의하신 사항으로써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 대상은 전자정보통신과 [redacted]를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1년간 임면하고자함을 설명하다.
- 조성극 이사장: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전원: 의견 교환 후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성극 이사장: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3호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신규임용자로 전자정보통신과 [redacted]를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언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법인의 행정지원인력의 사정으로 인해 2월에 이사회 개최를 못하여 지난 2월14일 사무국장의 대면 보고로 이사 전원이 신안산대학교 전임교원 전보(안)은 동의를 하였기에 소급적용하였음을 설명하다.

○ 심의안건 제4호: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휴직(안)

- 조성극 이사장: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휴직(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하도록 하다.
- 윤준한 사무국장: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지난 2월 14일 대면 보고로 동의하신 사항으로써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휴직자는 교원인사규정 제21조(휴직의 사유)에 따라 [redacted]가 대학의 구조개혁 등으로 각각 2022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휴직원을 신청하였음을 설명하다.
- 조성극 이사장: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이사전원: 의견 교환 후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성극 이사장: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4호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휴직(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법인의 행정지원인력의 사정으로 인해 2월에 이사회 개최를 못하여 지난 2월14일 사무국장의 대면 보고로 이사 전원이 신안산대학교 2022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휴직(안)은 동의를 하였기에 소급적용하였음을 설명하다.

○ 심의안건 제5호: 신안산대학교 유휴부지 토지임대(안)

- 조성극 이사장: 신안산대학교 유휴부지 토지임대(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하도록 하다.

간서명 란	이사장 조성극	조성극	이사 김영란	김영란	이사 김관유	김관유
----------	------------	-----	-----------	-----	-----------	-----

- 윤준한 사무국장: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신안산대학교 교지 내 농구장 옆 유희부지 약14,570㎡(4,400평) 부지에 대해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임대 계약 사항으로써 임대계약기간은 20년으로 임차인은 주식회사 데콘 이며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7% 상당으로 연간 약 7억 원으로써 기대효과로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의 재정위기 속에서 수입 다변화의 일환으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성 및 산학협력 증진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을 설명하다.
- 조성극 이사장: 이사들의 다른 의견을 요청하다.
- 김관유 이사: 임대의 경우 행정적 각종 제반사항에 대하여 설명요청하다.
- 윤준한 사무국장: 교육부의 사립대학 기본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유희면적에 대한 임대이고 구성원의 동의 또한 대학평의원회에 심의를 거쳤으며 대학의 임대관리운영 규정을 준수한 토지임대 계약임을 설명하다.
- 이사전원: 의견 교환 후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성극 이사장: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5호 신안산대학교 유희부지 토지 임대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심의안건 제6호: 신안산대학교 유희부지 일부 매각 추진(안)

- 조성극 이사장: 신안산대학교 유희부지 일부 매각 추진(안)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 윤준한 사무국장: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신안산대학교 교지 내 사회과학관 뒤 유희부지 약8,000㎡(2,420평)에 대해 법무부에서 출입국사무소 청사건립을 위한 매입 의사를 밝혀온 바,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시설 유치로 대학 홍보 및 취업효과 등이 클 것으로 판단됨을 설명하다.
- 조성극 이사장: 이사들의 다른 의견을 요청하다.
- 강성락 이사: 현재 법무부에서 해당 부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써 빠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다.
- 이사전원: 의견 교환 후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성극 이사장: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6호 신안산대학교 유희부지 일부 매각 추진(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지 매각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추후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와 심의를 요청하다.

○ 심의안건 제7호: 신안산대학교 수목정리 소나무 매각(안)

- 조성극 이사장: 신안산대학교 수목정리에 따른 소나무 매각(안)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간서명 란	이사장 조성극	조성극	이사 김영란	김영란	이사 김관유	김관유
----------	------------	-----	-----------	-----	-----------	-----

- 윤준한 사무국장: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수목정리 해당 위치로 사회과학관 뒤 유희부지에 있는 소나무 25주를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하며 매각대금은 약3,600만원이 교비 수입으로 충당됨을 설명하다.
- 조성극 이사장: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김관유 이사: 작년에 수목정리 소나무 매각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윤준한 사무국장: 2021년 8차 이사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정문 주변 및 도로경계 담장에 있는 수목(소나무) 500주를 하반기 굴취 및 벌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매각 금액으로 7억5천만원을 교비회계 수입으로 충당하였음을 보고하다.
- 이사전원: 의견 교환 후 상정안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찬성하다.
- 조성극 이사장: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심의안건 제7호 신안산대학교 수목정리 소나무 매각(안)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심의안건 제8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안)

- 조성극 이사장: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안)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하도록 하다.
- 윤준한 사무국장: 회의자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신안산대학교 교원징계 제청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적용으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고자함을 설명하다.
- 조성극 이사장: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인원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다.
- 윤준한 사무국장: 현재 정관에는 법인임원 중 2인, 교원 중 2인, 외부인사 1인을 임명 및 위촉하여함에 따라 교원 측 추천위원으로 신안산대학교 [redacted] 교수를 추천하였음을 보고하다.
- 조성극 이사장: 외부위원 1인은 법관 출신으로 [redacted] 변호사를 추천하며, 법인이사 2인을 교원징계위원으로 추천할 것을 이사들에게 요청하다.
- 강성락 이사: 법인이사로 [redacted] 이사를 추천하다.
- 이사전원: 의견 교환 후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은 신안산대학교 [redacted]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출석이사 전원이 동의와 찬성하다.
- 조성극 이사장: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임명(안)은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신안산대학교 [redacted] [redacted] 를 임명 및 위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심의안건 제9호: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 조성극 이사장: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상정 후 이사들의 의견을 묻

간서명 란	이사장 조성극	조성극	이사 김영란	김영란	이사 김관유	김관유
----------	------------	-----	-----------	-----	-----------	-----

자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금회 이사회 회의록에 조성극 이사장, 김영란 이사, 김관유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폐회선언

- 조성극 이사장: 더 이상의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2022. 3. 8.

학교법인 순효학원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

이사장 조성극 (서명) *조성극*

이 사 강성락 (서명) *강성락*

이 사 변학환 (서명) *변학환*

이 사 김영란 (서명) *김영란*

이 사 김관유 (서명) *김관유*

간서명 란	이사장 조성극	<i>조성극</i>	이사 김영란	<i>김영란</i>	이사 김관유	<i>김관유</i>
----------	------------	------------	-----------	------------	-----------	------------

[붙임]

「정관」 개정 신규대조표

구분	현행	개정안
<p>제9조 (회계의 구분)</p>	<p>제9조 (회계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 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의결 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또한 산학협력단 회계는 산학협력단장이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 허가를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집행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4.02.24.)</p> <p>④ 생략</p>	<p>제9조 (회계의 구분) ① ~ ② 좌동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대학평의원회(대학)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중·고) 심의를 거친 후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의결 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또한 산학협력단 회계는 산학협력단장이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 허가를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집행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4.02.24., 개정 2022.03.08.)</p> <p>④ 좌동</p>
<p>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p>	<p>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⑧ 좌동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9.09.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p>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⑧ 좌동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9.09.22., 개정 2022.03.0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 자.

간서명 란	이사장 조성극	조성극	이사 김영란	김영란	이사 김관유	김관유
----------	------------	-----	-----------	-----	-----------	-----

구분	현행	개정안
제30조 (이사회 의 소집)	제30조 (이사회 의 소집) ①~② 생략 ③ 신설	제30조 (이사회 의 소집) ①~② 좌동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3.08.)
제41조 (임면)	제41조 (임면) ①~⑤ 생략 ⑥ 신설 ⑦ 신설	제41조 (임면) ①~⑤ 생략 ⑥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 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 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 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 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5 및 제9조의 6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한다. (신설 2022.03.08.) 1. 교사로의 임용 당시 학교법인이 운영하 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사 결원이 있을 것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정관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 순효학원에 서 교원으로 임용되었던 자 ⑦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은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소속학교장은 교원을 휴직 및 복직에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청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3.08.)
제42조의 2 (정년보장 교원의 정수)	제42조의2 (정년보장교원의 정수) 정 년까지 임용하는 교원의 정수는 법정 전임교원의 12%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2.02)	제42조의2 (정년보장교원 및 계약제 교수의 정수) 정년보장교원 및 계약제 교수의 정수는 법정전임교원의 25% 이내로 한다. 단, 정년보장교원의 정 수는 12% 이내로 한다. (개정 2018.02.02., 2022.03.08.)

간서명 란	이사장 조성극	주심규	이사 김영란	김영란	이사 김관유	김관유
----------	------------	-----	-----------	-----	-----------	-----

구분	현행	개정안
제42조의5 (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p>제42조의5 (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p> <p>① 정관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신설 2002.02.26.)</p> <p>1. 근무기간</p> <p>가.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정관 제49조 4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p> <p>2.~6. 생략</p> <p>② 생략</p>	<p>제42조의5 (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p> <p>① 정관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신설 2002.02.26.)</p> <p>1. 근무기간</p> <p>가.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정관 제49조 4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3.08.)</p> <p>2.~6. 좌동</p> <p>② 좌동</p>
제42조의7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p>제42조의7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p> <p>① 생략</p> <p>1. 교 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정관 제49조 4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p> <p>2.~4. 생략</p> <p>②~⑧ 생략</p>	<p>제42조의7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p> <p>① 좌동</p> <p>1.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정관 제49조 4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2022년도부터 임용되는 교원은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22.03.08.)</p> <p>2.~4. 좌동</p> <p>②~⑧ 좌동</p>
제5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p>제5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호 생략</p> <p>2호 생략</p> <p>가목~라목 생략</p> <p>마목 신설</p> <p>③ 신설</p>	<p>제5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호 생략</p> <p>2호 생략</p> <p>가목~라목 생략</p> <p>마목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03.08.)</p> <p>③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03.08.)</p>

간서명 란	이사장 조성극	김성규	이사 김영란	김영신	이사 김관유	김관우
----------	------------	-----	-----------	-----	-----------	-----

구분	현행	개정안
제65조 (징계의 의결)	제65조 (징계의결) ①~⑤ 좌동 ⑥ 신설	제65조 (징계의결) ①~⑤ 좌동 ⑥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03.08.)
제68조의1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68조의1(징계의 사유 및 종류) 신설	제68조의1 (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교 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준 용한다. (신설 2022.03.08.)
제71조 (임용)	제71조 (임 용) ①~③ 생략 ④ 신설	제71조 (임 용) ①~③ 생략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22.03.08.)
제74조 (신분보장 및 정년)	제74조 (신분보장 및 정년) ①~② 생략 ③ 신설	제74조 (신분보장 및 정년) ①~② 생략 ③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을 따른다. (신 설 2022.03.08.)
제75조 (징계 및 재심청구)	제75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 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 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 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 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신설	제75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 70조의5, 70조의6을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08.) ②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22.03.08.) ③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 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 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 한다. (신설 2022.03.08.)

간서명 란	이사장 조성극	조성극	이사 김영란	김영란	이사 김관유	김관유
----------	------------	-----	-----------	-----	-----------	-----